

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2년 6월 24일
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(정례회의집회일등)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1일에서 9월1일로 한다.(제2조제2항)

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8월” 을 “9월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집회일)①(생략) ②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8월 1일에 집회한다.	제2조(집회일)①(헌행과같음) ②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.